

인천지방법원 2022. 7. 20 선고 2021나6566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성원

피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창호

변 론 종 결 2022. 5. 18.

판 결 선 고 2022. 7. 20.

제1 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 6. 23. 선고 2020가단226901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소외 C(부동산등기부등본상 주소: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D건물, E호)의 지분 1/2에 관하여, 2017. 3. 21. 체결된 매매예약 및 2018. 4. 25. 체결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2017. 3. 21. 접수 제1265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 및 같은 등기소

2018. 5. 8. 접수 제1909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1).

이 유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갑 제1, 6, 13, 14, 1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1) F은 C의 아버지이고, 피고와 G은 C의 누나이다.

2) C은 2017. 3. 21. 피고에게 그 소유인 이천시 K 답 1,874㎡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날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주었고, 2018. 5. 8. 같은 해 4. 2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쳐 주었다(이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예약 등’이라 하고, 그에 따라 마쳐진 가등기 및 본등기를 ‘이 사건 가등기’ 및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3) C은 2017. 4. 28. F에게 그 소유인 예산군 H 과수원 6,255㎡(이하 ‘과수원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날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주었고, 2018. 4. 26. 피고 및 G에게 위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같은 달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4) 원고는 2019. 4. 4. C, G 및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가단31610호로 C과 F 사이에 과수원 토지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예약, C과 피고 및 G 사이에 같은 토지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 C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매매예약 등을 각 취소하고, 위 각 계약에 기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취지의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 당시 원고는 위 각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이 모두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이 일반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5) 원고는 2019. 8. 16. 위 법원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토지와 관련된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취하하였다.

6) 위 법원은 2020. 2. 19. 과수원 토지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같은 해 3. 11. 확정되었다(이하 위 사건을 ‘선행 소송’이라 한다).

7) 원고는 2020. 3. 18. 위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과수원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L), 집행법원은 같은 달 20.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8) F은 2020. 3. 30. C에게 309,630,872원의 구상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과수원 토지에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였고, 2020. 4. 2. 가압류결정을 받아 같은 달 3. 그 집행을 마쳤다.

9) 원고는 2020. 5. 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10) 한편, F은 2020. 3. 31. C을 상대로 위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20. 9. 3. 원고(F) 청구인용 판결을 받았고(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가합30290), 위 경매사건의 집행법원은 2020. 11. 11. F에게 과수원 토지의 매각대금 중 89,354,354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나. 당사자들의 주장

1) 피고

원고가 2019. 4. 4. 선행 소송으로 이 사건과 동일한 청구원인을 들며 이 사건 매매예약 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늦어도 원고는 선행 소송 제기시에는 이 사건 매매예약 등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2) 원고

원고가 2019. 4. 4. 선행 소송으로 이 사건 매매예약 등의 취소를 구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원고는 선행 소송에서 C의 재산상태를 조사하던 중 이 사건 매매예약 등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C의 사해의사가 없다고 판단하여 소를 취하하였던 것이고, 과수원 토지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L 부동산강제경매사건의 진행 중인 2020. 4. 14. F이 309,630,872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한 사실을 알게 되어 2020. 5. 1. 이 사건 매매예약 등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의심을 갖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며, 2020. 10. 30.경 F이 C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의 제1심 판결문을 확인하고서야 이 사건 매매예약 등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이 사건 매매예약 등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1년 내에 제기된 것으로 적법하다.

다.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는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민법 제406조 제2항).

나)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나, 채권자가 그 사해행위의 존재를 확정적으로 인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서울고등법원 2004. 4. 1. 선고 2003나12962 판결)

2) 이 사건의 경우

가) 앞서 인정한 사실들과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선행 소송 제기일인 2019. 4. 4. 이 사건 매매예약 등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원고는 2017년 4월 말경 피고로부터 C이 다액의 도박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들었고, 선행 소송을 제기할 무렵에는 C이 잠적하여 그와 연락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또, 과수원 토지에는 채권최고액 합계 3억 5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 사건 토지에는 채권최고액 4억 2,9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던바, 원고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수원 토지 및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처분행위 모두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선행 소송에서 위 각 토지에 관한 처분행위 모두에 대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또, 원고는 선행 소송을 제기하면서 C이 사업상 지게 된 채무로 채무초과상태에 놓이게 되자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고, F, G과 과수원 토지 및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예약,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가등기, 본등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것이므로, 과수원 토지 및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체결된 일련의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이 모두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매매예약 등에 대하여도 취소를 청구하였던바(을 제6호증 제8쪽), 위와 같이 원고가 선행 소송의 소장을 통해 이 사건 매매예약 등이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늦어도 선행 소송을 제기한 날에는 이 사건 매매예약 등에 관한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원고는 F이 과수원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아 집행을 마친 사실을 알고서야 이 사건 매매예약 등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의심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F이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으로 삼은 구상금 채권 309,630,872원은 선행 소송에서 F과 피고가 C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금 채권의 합계액(=M에 대한 채무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채권 1억 6,000만 원 + N에 대한 채무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채권 11,687,000원 + 과수원 토지 담보대출금 대위변제액 124,143,872원 + O에 대한 채무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채권 1,380만 원)의 합계액과 같은바, F이 피보전채권으로 삼은 구상금 채권이 선행 소송에서 드러나지 않은 새로운 채권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부동산가압류 사실을 통해 이 사건 매매예약 등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비로소 의심하게 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신빙하기 어렵다.

(4) 오히려 선행 소송의 진행경과, 과수원 토지의 가액, 과수원 토지에 관한 경매사건에서의

채권자들의 배당요구신청내역(갑 제6, 9, 10호증)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선행 소송을 제기할 때 이 사건 매매예약 등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다른 채권자들이 배당요구신청을 하지 않거나, 피고와 F의 채권이 허위채권이어서 배당요구신청을 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과수원 토지에 대한 강제집행만으로도 피보전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 등의 취소청구를 취하하였다가, 경매사건에서 예산세무서와 F이 다액의 당해세 및 구상금채권으로 배당요구를 함으로써 피보전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할 염려가 생기자 비로소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는 2019. 4. 4. 선행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0. 5. 1.에서야 제기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사해행위취소소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옳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양민호, 판사 김혜인, 판사 전솔이

1) 항소장에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취지로 항소취지가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가 2021. 8. 5.자 준비서면을 통해 본안전 항변을 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선해한다.